

독일의 경제성장촉진법

- Gesetz zur Beschleunigung des Wirtschaftswachstums (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 -

I. 입법의 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법률, 일명 경제성장촉진법 (Gesetz zur Beschleunigung des Wirtschaftswachstums: 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은 2009년 12월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2009년 9월 27일에 실시된 연방의회선거의 결과로 탄생한 새로운 연립정부¹⁾의 연립정부 구성협상 과정에서 확정되었던 각종 세금감면 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2007년 시작되었던 세계적인 경제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한 해 동안 독일 연방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정책인데,²⁾ 독일 연방 정부는 이 법률안을 통해 ① 경제성장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② 과중한 조세부담의 감면, ③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구조의 확충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금감면 조치들로 인해 연방정부는 약 46억 3천만 유로, 주 정부들은 총 22억 8천만 유로, 자치단체들은 총 15억 7천만 유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³⁾



1) 기민/기사당(CDU/CSU)연합과 자민당(FDP)간의 연립정부.

2)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2009년도에 앞서 내놓은 두 가지 정책은 이른바 경기부양 패킷 (Konjunkturpaket)이라고 불리는데, 경기부양 패킷 1은 주로 시민들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수당의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경기부양 패킷 2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해고방지를 위한 단축근무자보조금 제도의 요건완화 및 기간연장, 금융권에 대한 채무보증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http://www.spdfraktion.de/cnt/rs/rs_datei/0,,10599,00.pdf)

3)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000/1700015.pdf>.

II. 법률안의 개관

제1항	-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4h조, 제6조, 제9조, 제32조, 제51a조, 제52조, 제66조의 개정 - 주요내용: 이자비용 세공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4h조), 소액자산 즉시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6조), 아동부양공제액의 상향조정(제32조, 제51a조)제2항
제2항	- 법인세법(Körperschaftsteuergesetz) 제8a조, 제8c조, 제34조의 개정 - 주요내용: 이자비용 세공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8a조), 기업의 손실에 대한 세공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8c조) 제3항- 영업세법(Gewerbsteuergesetz) 제8조, 제36조의 개정
제3항	- 영업세법(Gewerbsteuergesetz) 제8조, 제36조의 개정 - 주요내용: 영업이득의 범위 관련규정의 개정(제8조)
제4항	- 회사전환세법(Umwandlungssteuergesetz) 제2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20조, 제27조의 개정 - 주요내용: 회사의 구조 전환 시에 이전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공공제관련규정의 개정(제2조), 합명회사의 이전 시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공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4조), 회사의 분할/합병/부분양도 시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공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15조)
제5항	- 판매세(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제12조, 제28조의 개정 - 주요내용: 숙박업계의 부가가치세율을 7%로 인하(제12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제13a조, 제19조, 제19a조, 제37조의 개정 - 주요내용: 기업상속 시의 세공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제13a조), 형제자매와 조카에 대한 상속세를 인하(제19조)
제7항	- 토지취득세법(Gründerwerbsteuergesetz) 제6a조 신설, 제19조, 제23조의 개정 - 주요내용: 기업의 구조변화를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취득세 감면규정의 신설(제6a조)
제8항	- 연방아동보조금법(Bundeskindergeldgesetz) 제6조의 개정 - 주요내용: 아동보조금의 인상(제6조)
제9항	- 사회적 연대를 위한 가산세법(Solidaritätszuschlaggesetz) ⁴⁾ 제3조, 제6조의 개정 - 주요내용: 소득세법상의 자녀양육 공제범위의 확대에 맞춰 동일하게 사회적 연대를 위한 가산세법상의 자녀양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제3조)
제10항	- 투자지원금법(Investitionszulagengesetz) ⁵⁾ 제2조의 개정 - 주요내용: 투자지원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투자액에 항공기, 승용차 및 소득세법상의 즉시공제가 가능한 소액자산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정(제2조)



4) 사회적 연대를 위한 가산세법(Solidaritätszuschlaggesetz)은 독일 통일 이후 제기된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 간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세를 내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일종의 가산세를 걷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세율은 5.5%이며, 월소득이 세전 1250유로 이하인 개인과 부수입이 4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납부해야 할 연간 소득세가 972유로 이하인 개인 역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세의 자녀양육공제범위가 이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적 연대를 위한 가산세법을 통해 징수된 세금은 주로 구 동독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같은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용된다.

5) 투자지원금법(Investitionszulagengesetz)은 2014년 1월 1일까지 구 동독지역(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튀링엔 주)에 일정한 조건(최소 5년 이상의 투자기간 등)을 충족시키는 최초 신규투자액에 대해 최대 12.5%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 역시 구 동독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11항	- 재정보상법(Finanzausgleichsgesetz) ⁶⁾ 제1조의 개정 - 주요내용: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아동보조금의 인상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그동안 주 정부에 분배하던 판매세(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액을 인하는 내용의 개정(제1조)
제12항	- 재생가능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제66조 1a항의 신설 - 주요내용: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발전시설물의 추가(제66조 1a항)
제13항	- 에너지세법(Energiesteuergesetz) 제50조, 제57조의 개정 - 주요내용: Bio 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난방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폭의 축소(제50조), 농업 및 산림업 분야에 대한 세금감면 폭의 축소(제57조)
제14항	- 효력발생규정

III. 입법 과정 및 법률안에 대한 논쟁과 비판

1. 개요

2009년 11월 9일에 연방재정부에서 작성한 경제성장촉진법안이 연방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 법률안은 또한 동일한 날짜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의 연방의회 의원단에 의해서도 제출되었다.⁷⁾ 이후 2009년 11월 30일에 연방의회의 재정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연방의회의 재정소위원회는 일부 내용의 표현을 다듬어

2009년 12월 2일에 의결권고안을 제출하였다. 2일 후인 12월 4일에 연방의회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들 322명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 의원 24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⁸⁾ 2009년 12월 18일에 연방상원⁹⁾ 역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¹⁰⁾ 이 법률은 2009년 12월 30일에 발간된 연방법률관보 1부 제81호(3950페이지~3956페이지)에 실려 공고되었다.



6) 재정보상법(Finanzausgleichsgesetz)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의 세수 분배와 재정적자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7)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000/1700015.pdf>.

8) <http://dipbt.bundestag.de/dip21/btp/17/17010.pdf#P.761>.

9) 연방상원(Bundesrat)은 연방 각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상원 역시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10) <http://dipbt.bundestag.de/dip21/brd/2009/0865-09B.pdf>.

2. 재정소위원회의 청문회

11월 30일에 개최된 연방의회 재정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독일 산업 연합회(BDI)는 이 법률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연방납세자연합 역시 보다 더 개선된 세금공제의 가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전문가감정평가인이었던 로렌즈 야라스(Lorenz Jarass)는 건설한 운영이 필요한 공공재정의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세금감면조치에 대응되는 다른 재정수입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막대한 수입과 자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업과 기업의 매도자들에게만 유리한 조세감경안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이 법률안이 “경제성장방해법”이 될 것이라고 혹평하였다. 또한 청문회에 참여했던 평등복지연합회는 실업급여 II를 받는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동보조금 인상액이 이 실업급여 II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 백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전혀 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였다.¹¹⁾

3. 야당의 비판

사민당(SPD)의 연방의회의원인 니콜레테 크레슬(Nicolette Kressl)은 이 법안이 개별적인 이익에만 봉사할 뿐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밀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호텔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계획에 대해 그녀는 새로운 재정적자의 발생이 예견되며, 특히 각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좌파연합의 그레고어 기지(Gregor Gysi)는 아동보조금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이 법안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보조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Hartz-IV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인 부모는 이 법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이미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중복적인 지원”이라고 비판하였다. 녹색당의 재정전문가인 프리츠 쿤(Fritz Kuhn)도 이 법률이 자의적이고 관료적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¹²⁾



11) http://www.bundestag.de/presse/hib/2009_11/2009_288_01.html.

12) http://www.tagesschau.de/inland/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114.html?keepThis=true&TB_iframe=true&height=600&width=720.

4. 일부 연방 주들의 반대입장

부분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연방 각 주정부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특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최대 7천만 유로까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 법률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 소속으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주지사를 맡고 있는 페터 해리 카르스텐센(Peter Harry Carstensen)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세수감소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요구하였다. 그는 2009년 11월 26일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와 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사 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더 나아가 재정적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 상원에서의 법안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었다.¹³⁾ 작센 주 역시 최대 1억 1천만 유로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었다.¹⁴⁾ 하지만 이 두 연방 주는 결국 이 법안

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이 주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관련 투자를 해 줄 것과 약 3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센터 개편을 위한 비용의 보상 등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이다.¹⁵⁾ 한편 이 과정에서 니더작센 주의 주지사인 기민당 소속의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ulff)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작센 주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최종 투표에서는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¹⁶⁾

5. 호텔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

경제성장촉진법상의 세금감면 조치들 중 호텔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러한 비판은 기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서도 나왔다. 연방의회 의장인 기민당 소속의 노베르트 램머트(Norbert Lammert)는 입법과정에서 이와 관련



13)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steuerstreit-carstensen-spricht-von-ruecktritt;2491033>.

14) <http://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widerstand-auch-sachsen-gegen-steuerpaket;2495155>.

15) <http://www.taz.de/1/politik/deutschland/artikel/1/bundesrat-billigt-steuersenkungen/>.

16)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6499,00.html>.

한 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호텔업계에 대해서만 매년 10억 유로에 가까운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비판하였다.¹⁷⁾ 작센-안할트 주의 주지사인 기민당 소속의 볼프강 뵘머(Wolfgang Böhmer) 역시 숙박업계에 대한 이러한 지원방안을 “고객관리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¹⁸⁾ 한편 연방 소비자보호 센터의 의장인 게르트 빌렌(Gerd billen)은 호텔업계가 2010년 1월 1일부터의 세금감면 혜택을 자신의 고객들에게도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호텔숙박료의 인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¹⁹⁾

호텔업계에 대한 이러한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2010년 1월에는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줍스탄티아(Substantia) 주식회사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FDP)에게 총 110만 유로의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줍스탄티아 주식회사는 독일에서 피벤픽 호텔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자민당은 2009년 말에 연립정부 구성협상 당시 호텔업계

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공개되자 야당들은 거액의 후원금과 세금감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거세게 비판하였는데, 녹색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대표인 레나테 쿨나스트(Renate Künast)는 “한편으로는 호텔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시켜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민당이 호텔업계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챘잖다”면서 자민당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자민당 소속의 옛 장관이었던 힐데가르트 함-브뤼허(Hildegard Hamm-Brücher) 역시 자신의 정당이 “특정 계층의 세금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²⁰⁾ 녹색당은 사민당과 좌파연합의 지지를 얻어 2010년 1월 19일에 연방의회에 호텔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혜를 종결하기 위한 긴급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제안은 연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의원의 반대로 기각되었다.²¹⁾



17)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9120,00.html>.

18)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69752,00.html>.

19) http://www.fr-online.de/in_und_ausland/wirtschaft/aktuell/?em_cnt=2174522&.

20)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72303,00.html>.

21)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bundestag-fdp-spende-entzweit-das-parlament_aid_472109.html.

IV.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1. 가계에 대한 지원방안

가계에 대한 지원방안이 이 법률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자녀 1명당 세금공제액이 연간 총 6,024유로에서 7,008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부양공제액(Kinderfreibetrag)이 연 504유로 증가된 4,368유로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양육 및 교육공제액이 연 480유로 증가된 2,640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소득세법 제32조, 제51a조).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보조금(Kindergeld)이 20유로 인상되어 아이가 하나이거나 또는 둘인 가정에서는 매월 아이 1명당 184유로의 아동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며, 아이가 셋인 가정에서는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 매월 190유로의 아동보조금을, 그리고 네 번째 아이부터는 각 215유로의 아동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연방아동보조금법 제6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아이가 있는 가정이 세금감면과 지원금인상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금전상의 혜택은 독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총 46억 유로에 달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II를 받는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동보조금 인상액이 이 실업급여 II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한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상속세법의 개정

상속세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와 조카에 대한 상속세율이 기존의 30~50%에서 15~43%로 하향조정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연방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를 통해 매년 약 3억7천만 유로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한다.

또한 기업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관련 규율이 완화되었는데, 기존의 상속세법에 따르면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기업자산의 85%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상속 후 7년간 상속받은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7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이 상속받을 당시의 1년간 임금총액의 650%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조건은 상속받은 기업자산의 85%에 대해 비과세하는 대신에 상속받은 기업을 가급적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7년의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맞춰 5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이 상속받을 당시의 1년간 임금총액의 400%만 되면 되는 것으로 하향조정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임금총액 관련 기준과는 무관하게 직원이 10명 이하인 기업에 대한 상속은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를 직원 20명 이하인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a조).

3. 호텔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Mehrwertsteuer) 인하

호텔, 펜션,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판매세 (Umsatzsteuer), 즉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가 19%에서 7%로 하향조정 되었다. 단기투숙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아침식사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향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매세법 제12조).

4. 토지취득세의 감면

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자산양도 등과 같은 기업의 구조변화를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었다(토지취득세법 제6a조).

5. 법인세법 등의 개정

법인세법 개혁안 중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완화시켜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세금감면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업들이 경제성 재고방안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들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새로 설립된 회사들이 경영상의 새로운 투자 내지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법인세법 제8c조).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혜택의 엄격한 한도를 정하고 있는 이자비용 공제제한규정을 보다 완화하였는데, 이자비용

(Zinsaufwendung)의 공제를 위한 요건들이 보다 완화되었으며, 이자비용 공제제한범위를 3백만 유로까지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법인세법 제8a조, 소득세법 제4h조).

6. 즉시공제의 한도금액 상향조정

즉시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자산(사무용 비품 등)의 액수가 410유로로 다시 상향조정되었다. 즉시공제액은 2007년 말까지 410유로였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150유로로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410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비용들은 영업비용으로 지출처리가 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6조).

7. 임대수익의 영업이익 편입범위 축소

영업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임대료 수익의 65%를 영업이익에 포함하였던 것을 이제는 임대료 수익의 50%만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영업세법 제8조).

8.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금 상향조정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월 1일 전에 가동이 개시된 전력설비들의 전기공급에 대한 지원금을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따라 인상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확장하였다(재생가능에너지법 제66조 1a항).

하지만 동시에 바이오에너지물질에 대한 지원은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축소되었는데, 바이오에너지물질을 이용한 전력생산과 난방에 대한 세금감면의 폭이 축소되었으며, 또한 농업과

산림업 분야에 대한 세금감면의 폭 역시 축소되었다(에너지세법 제50조, 제57조).

배정범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